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5-148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5호(2013.04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01호(2013.09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73호(2014.07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5년 02월 05일

성 북 구 청 장 인

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공람 · 공고 내용

가. 사업명칭 :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25-55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105,163.90㎡

라.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3층 15개동 공동주택(아파트) 1,6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16,629.3㎡, 근린공원 22,782.0㎡, 녹지 2,565.3㎡,

공공청사 1,764.7㎡

3. 공람기간 : 2015.02.05.~2015.02.25.(21일)

4. 시 행 자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20-13
- 성 명 :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

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34)

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11-7520)

7. 관계도서 :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
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
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
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